

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8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  
발 의 자: 이병도, 박강산, 박상혁,  
박유진, 서상열, 서준오,  
성흠제, 이병윤, 이용균,  
임만균, 정준호, 최기찬,  
황철규 의원(13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의회의 의정활동은 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의 활동 뿐 아니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실질적인 준비기간도 포함되므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임기 시작 전의 의정활동시에도 전문성 확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 지원범위에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함(안 제3조제3항).

### 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의원”을 “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 번호

2023101100000010

## 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이병도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박지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1.

회신일 : 2023.10.1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##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 
재정분석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(의회의 의정활동원칙) 제3항의 ‘의원’을 ‘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’ 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(2호)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 - 같은 조례안 제3조제3항의 ‘의원’에 ‘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’을 포함할 경우 ‘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’ 하는 범위는 같은 조례에 근거한 다른 조례(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등)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상되어야 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정수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박지영

☎ 02-2180-7952

e-mail : 7magic7@seoul.go.kr